

목회자윤리세미나

기신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



발제1 _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 고재길 교수(장신대)

발제2 _ “목회자의 경제윤리” 신기형 목사(이한교회)

2017년 9월 20일 (수) 오후 1시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 2층 새문안홀

주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사회연구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문의 (02)794-6200,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일 2017년 9월 20일(수) | **발행인** 백종국 | **편집인** 정병오 | **편집** 윤신일

발행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소] (04284)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홈페이지] www.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페이스북] facebook.com/giyunsil

목차

-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 05**
 - _ 고재길 교수 (장신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부소장)
- **목회자의 경제윤리 22**
 - _ 신기형 목사 (이한교회 담임목사)
- **부록: 종교인 소득 관련 개정 세법의 특징 34**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¹⁾

고재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부소장

I. 서론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입법 즉, 종교인 과세 입법은 2015년 12월에 개최되었던 19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 1968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 입법은 47년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²⁾ 종교인들도 기획재정부가 ‘2015년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한 종교인 과세 입법을 최고의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성직자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구멍가게의 주인도 세금을 내고 있고, 품팔이로 일을 하는 근로자도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과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³⁾ 종교인 과세는 이러한 과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2018년부터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종교인들(특히 개신교)로부터 어느 정도까지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 입법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⁴⁾ 한편,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기독교단체가 이번 입법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은 종교인 과세가 세법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현상 위주로 간

1) 이 논문 -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종교인의 납세문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중심으로” - 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의 학술지-「선교와 신학」(2017.2), Vol.41, 187-221. - 에 게재되었음.

2)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개신교 목사, 가톨릭 신부, 불교 승려를 가리킨다. 본 연구자는 종교인 과세를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종교인 납세는 종교인의 의지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종교인을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개신교 목회자로 이해하고 있음을 미리 밝힌다.

3) 강성일, “47년만의 종교인 과세 입법, 아직도 먼 길” 「가톨릭평론」 제 2호 (2016.3), 147.

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14043&code=61221111&cp=nv>
(접속일: 2016.12.23.)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이번 법안이 동일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본 연구자는 최근의 복잡한 상황까지 주시하면서 종교인의 납세 문제를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인의 납세가 공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교회의 윤리적인 실천의 형태임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종교인의 납세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종교인 납세논란의 과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III장은 종교인의 소득과 납세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종교인의 납세문제의 쟁점을 비평적으로 성찰할 것이다. V장은 종교인 납세문제를 기독교윤리의 관점, 특히 교회의 공적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마지막 결론(Ⅵ장)은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종교인 납세논란의 과정

A. 1990년대의 논란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한 논란은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의 논쟁은 국세청장이 1968년 7월 2일에 성직자 과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촉발된 상황과는 대조적이었다. 그 이유는 국세청장의 발언이 종교계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쟁의 주제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종교인 납세는 1990년대에 들어서 교회갱신의 주제와 연결되면서 논쟁의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⁶⁾ 1992년에 개신교 월간지인 「월간목회」는 목회자의 세금납부를 논쟁의 주제로 삼아 지상토론을 전개했다. 한명수 목사(창훈대학교 담임)와 손봉호 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는 7회(1월~7월)에 걸쳐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해 논쟁했다. 손봉호 교수는 납세찬성론자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그는 “노동의 대가를 얻은 소득이라면 당연히 법적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이와는 달리 한명수 목사는 목회자의 사역을 일반 근로자의 노동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그는 이중과세의 논리에 근거하여 목회자의 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낸 현금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개신교의 납세논쟁에 대해 국세청은 1992년 9월 18일에 공식적인

5) <http://www.nocutnews.co.kr/news/4513466> (접속일: 2016.12.23.)

6) 권혁률, “종교인 납세, 이제는 결단할 때” 「기독교사상」 (2015.10), 195.

7)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이 입장에 근거하여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 독일에서 종교인은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받고 있고, 국가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캐나다의 경우, 종교인들은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종교인들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보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신고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4권 특별호 (2011.12), 69-71.

8) 권혁률, “종교인 납세, 이제는 결단할 때”, 195.

반응을 내어놓았다. 현 정부는 종교인의 납세에 대한 강제징수의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종교인의 납세는 성직자의 자율성에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이후, 종교인의 납세논란은 개신교 내부에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가톨릭주교회의는 1994년에 사제의 납세의무를 결의하였고, 한국 가톨릭에서는 1995년부터 사제들의 납세가 시행되었다.⁹⁾ 더 정확하게 언급하면, 주교회의는 “전체 교구 가운데 4개 교구를 제외한 모든 교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결정하였다.”¹⁰⁾

B. 2000년대의 논란

2000년대의 본격적인 종교인 납세 논쟁은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종비련은 2006년에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탈세 현상을 용인했던 그 당시의 이주성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종교인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거둔다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¹¹⁾ 이에 국세청은 관계기관에 종교인의 납세 가능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주제를 6년 동안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2007년 6월에는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미나가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에 의해 개최되었다.¹²⁾ 종교인 납세논란을 심도 있게 다룬 것은 2007년 7월 12일에 있었던 MBC ‘100분 토론’이었다. MBC의 시사보도프로그램인 ‘뉴스후’는 2008년 1월 26일에 종교인들의 호화로운 사생활을 폭로했다. 즉, “세금도 안 내도 되는” 종교인들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종교인의 면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다시 점화된 것이었다. 일주일만 지난 1월 31일에는 MBC ‘100분 토론’이 종교인 납세문제를 다시 다루었다. 그 결과, 종교인 납세논쟁은 사회적 치원까지 확산되었고 마침내 종교법인법까지도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¹³⁾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쟁은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종교인 과세 추진’ 발언(2012년 3월 19일)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KBS 심야토론은 2012년 7월 21일에 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와 세금이라는 주제 하에 토론회(2012년 11월 15일)를 가졌고, CBS 크리스천NOW 프로그램이 2013

9) 심상법, “목회자 납세에 관한 성격적 제안” 『신약연구』 제13권 제4호, 785.

10)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대각사상』 제 20집 (2013.12), 363. 가톨릭의 종교인 납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개신교보다 더 빨리 시작되었다. 1983년에 이미 가톨릭사제들은 전국 관리국장 회의에서 자기들보다 더 낮은 생활수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사제들의 납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의 논문.

11) 권혁률, “종교인 납세, 이제는 결단할 때”, 195-96.

12)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363-64.

13) 심상법, “목회자 납세에 관한 성격적 제안”, 786.

년 1월에 진행했던 토론회의 주제는 ‘목회와 세금’이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 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이 토론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그 결과,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차원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김영주 총무)는 각 교단의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¹⁴⁾

한편, 박근혜 정부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2013년 8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이것은 종교인의 소득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종교인의 봉사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입장을 반영한다.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기타소득’ 과세는 본래 201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새누리당의 시행연기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시행은 2년 더 연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인 과세의 개정안은 2015년 12월의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비판의 여지를 갖고 있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던 것과는 달리, 소득의 종류에 ‘종교인 소득’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한 내용”이고,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입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한 부분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개신교의 입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KNCC는 종교인의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반면에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자발성에 따른 종교인 납세를 주장했다.¹⁵⁾

III. 종교인의 소득과 납세 현황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중에는 종교인 납세 논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종교인들의 소득과 납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톨릭의 사례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부들의 평균연봉은 1,500만원에 이르고, 수녀들의 평균연봉은 1,050만이었다. 1994년 3월에 한국가톨릭주교회의는 종교인 납세를 결정하면서 생활비, 성직 수행을 위한 활동비, 수당과 휴가비를 납세 대상의 범위에 넣었다.¹⁶⁾ 그 의결 이후, 가톨릭은 16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가 세금을 내고 있다. 16개 교구에서 제외된 4개 교구 가운데 1개 교구는 군중교구이다. 따라서 군중교구는 군인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3개 교구는 모두 과세표준에

14) 위의 논문, 786-87.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한 불교의 긍정적인 입장은 2012년 2월에 개최된 제189차 임시중앙총회에서 나왔다.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364.

15) 권혁률, “종교인 납세, 이제는 결단할 때”, 196-97.

16)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세무회계연구』 vol. 45 (2015), 159.

미달하는 교구이다. 신부들이 받는 생활비와 활동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¹⁷⁾ 다음은 불교의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임무가 없는 승려는 가끔 100만원 내외의 보시금을 받는다. 각 종단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행연금(기본경비), 보건의료비, 간병(요양)비, 거주비 등을 지원한다.¹⁸⁾ 불교의 경우에도 군대에서 사역하는 군승법사는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태로 낸다. 군승이 아닌 승려들은 일반적인 월급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일부 종단은 공식적인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납세에 참여하고 있다.¹⁹⁾

마지막으로 개신교의 사례를 살펴보자. 개신교 목사는 일반적으로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소득을 급여를 받고, 퇴직할 경우에는 교회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로부터 차량과 사택을 지급받는 목사들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는 차량유지비를 비롯하여 사택에 부과되는 공과금, 관리비, 자녀 교육비를 받는 목사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대비용은 일반적으로 기본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²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2013년 1월에 개신교 담임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담임 목사의 월 평균사례비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243만원이었고, 중소도시의 목사는 202만원, 읍면지역의 사례비는 163만원이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할 경우, 전국 평균사례비는 260만원, 대도시의 그것은 287만원으로 나타났다.²¹⁾ 그러면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2013년에 개최한 교회재정세미나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 고신, 합신 등) 그리고 감리교(기감), 침례교(기침), 순복음(기하성), 독립교단(독립)에 속한 총 46개의 교회들의 납세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²²⁾

17)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365.

18)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158.

19)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365.

20) 이원주,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67.

21) <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481>,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155에서 재인용.

22)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3년 교회재정세미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자료집(2013.11.15.), iii.

〈목회자 근로소득세 납세교회 사례수집 현황〉²³⁾

순번	교회명	지역	교단	규모	시행 시기
1	경동교회	서울	기장	중형교회	1999년
2	고기교회	용인	통합	-	
3	나들목교회	서울	독립	중형교회	창립(2001년)부터
4	남서울은혜교회	서울	합신	중형교회	
5	너머서교회	일산	통합	-	2008년
6	높은뜻 광성교회	서울	통합	중형교회	창립(2008년)부터
7	높은뜻 정의교회	서울	통합	중형교회	창립(2008년)부터
8	높은뜻 푸른교회	서울	통합	중형교회	창립(2008년)부터
9	높은뜻 하늘교회	용인	통합	중형교회	창립(2008년)부터
10	다니엘새시대교회	서울	고신	-	
11	다드림교회	서울	통합	-	
12	더함공동체교회	인천	독립	-	
13	만나교회	분당	기감	대형교회	
14	명성교회	서울	기하성	대형교회	약 10여 년 전
15	목산침례교회	서울	기침	대형교회	
16	백주년기념교회	서울	독립	대형교회	2005년
17	부천예인교회	부천	독립	-	
18	부천평안교회	부천	합신	-	
19	분당샘물교회	분당	고신	중형교회	1998년
20	분당우리교회	분당	합동	대형교회	
21	빛과소금교회	일산	합동	-	
22	빛소금교회	서울	고신	-	
23	사랑의교회	서울	합동	대형교회	약 10여 년 전
24	새문안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25	서문교회	서울	통합	중형교회	
26	서울영동교회	서울	고신	중형교회	
27	선한목자교회	성남	기감	대형교회	약 10여 년 전
28	성광교회	평택	기감	-	2013년
29	소망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1993년
30	순복음인천교회	인천	기하성	대형교회	1983년
31	여의도순복음교회	서울	기하성	대형교회	약 10여 년 전
32	연동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33	열린교회	안양	합동	대형교회	
34	열린문교회	수지	합신	-	
35	영락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1960년대
36	오륜교회	서울	합동	대형교회	2005년
37	온누리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약 20여 년 전

23) 본 자료의 사례는 “1)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회원교회 중 2)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소득세 신고 관련 상담 신청 교회 중 3)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지원활동 신청 교회 중 4) 2013년 11월 재정결산서 공개 요청한 34개의 주요 교회 중 5) 기타 경로의 수시 모집”에 근거하여 수집되고 재구성되었다. 위의 책.

38	이한교회	서울	통합	-	
39	전주안디옥교회	전주	기장	중형교회	
40	주님의교회	서울	통합	대형교회	
41	주안장로교회	인천	통합	대형교회	
42	지구촌교회	분당	기침	대형교회	
43	충현교회	서울	합동	대형교회	약 20여 년 전
44	푸른솔송곡교회	서울	합동	-	2013년
45	향린교회	서울	기장	중형교회	
46	홍성교회	서울	합동	중형교회	2013년

위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아래의 소결론에 이른다. 먼저, 대형교회인 영락교회가 1960년대부터 자발적인 납세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받을 만하다. 1990년대 초부터 그리고 2000년대 초부터 납세에 동참한 대형교회의 수도 20여개에 이르고 13개의 중형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 대형 또는 중형교회로 분류되지 않는 13개의 교회가 자발적인 납세에 동참하고 있다.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교회 창립의 시기부터 납세를 행한 5개의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개신교회들도 종교인 납세논란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발적인 납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신교를 포함하여 한국의 종교인들이 종교인 납세요구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자발적인 납세에 참여한 종교인들은 적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종교인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와 공동체의 관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이 이와 같지는 않다. 종교인, 특별히 개신교 내부에서 발생한 납세논란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다음에 나오는 IV장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룬다.

IV. 종교인 납세 문제에 대한 비평적 성찰

종교인 납세가 사회적 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은 종교인 납세문제를 비평적인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 주제에 대한 일반 학문(세무학)과 신학의 관점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1. 세무학적 관점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해 발언(2012년 3월 19일)한 이후, 종교인 납세에 대한 논쟁들이 적지 않았다. 개신교의 예장 총회(합동)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공청회를 2013년 6월 20일에 개최했다. 여기에서 신용주(세무사)는 종교인 납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강연에서 납세반대의 근거와 납세찬성의 근거를 분류한다.²⁴⁾ 그의 견해에 의하면 종교인들이 납세를 반대하는 이

24) 신용주, “목회자(승려포함)등의 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대한예수

유는 다음의 근거에서 나타난다: 첫째, 목회자가 납세를 하려면 목회자의 사례금이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해 놓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목회자 사례금이 근로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과세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므로” 관습법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목회자 납세에 대한 성경상의 검토가 필요하다. 납세는 목회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²⁵⁾ 넷째, 목회자 납세 시에 국가가 종교(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정부권력에 비협조적인 목회자에게 세무사찰과 같은 방법으로 정부의지를 목회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²⁶⁾ 그러면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에서 과세는 당연하다. 둘째, 목회자 사례금은 근로소득이다. 셋째, 목회자 납세는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넷째, 목회자 면세는 정통성이 약한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다섯째, 목회자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 다섯째, 목회자 납세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들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신용주는 결론에서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다. 목회자 납세문제는 그의 경우에 단순한 세법상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근본규범인 신앙의 자유와 관련시켜서 심각하게 논의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 “바람직한 것은 현재와 같이 정부는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자세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²⁷⁾

한편, 박중영(세무학 박사과정)은 세무학(회계학)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연구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2013년 정부의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분석했다.²⁸⁾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개정안은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은 정부차원의 고의적인 방관에서 기인한다. “종교인의 소득 구분을 정의하기 이전에”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인은 “매월 일정한 사례금, 활동비를 받으면 소득세

교장로회총회(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 연구위원회, 「2013년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 공청회 자료집」 (2013.6.20.), 38-47.

25) 흥미롭게도 연구자는 이를 다음의 성서구절(삼상 8:5-9)을 통해 입증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구절이 목회자 납세반대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6) 위의 논문, 39-43.

27) 43-47. 그는 결론에 덧붙인다. “정부지도자와 종교지도자가 1년에 1, 2회 만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와 서로 협조가 요청되는 부분을 논의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사회의 어둡고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과 목회자 사례금 중의 일정부분은 쓰이도록 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서로 윈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가 영세한 교회를 지원하는 논의는 하나님의 공급력에 의하여 교회의 성장 발전을 가져오는 역동성의 삭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심히 경계해야 한다. 영세한 교회나 목회자 등에 대한 지원은 4대 보험 유사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제도를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개발하여 교단이나 기독교 내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의 논문, 47.

28)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159-64.

법상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관행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것은 “행정상의 관행” 또는 정부의 고의적인 방관의 결과이다.²⁹⁾ 둘째,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과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의 큰 차이는 개정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할 경우보다 소득금액은 69%,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의 31%, 산출세액은 79.8% 감소한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감소시켜주는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단체의 종사자와 비교할 때,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³⁰⁾ 셋째, 개정안은 종교인 사이의 “수직적 과세형평을 악화시킨다.” 조세부과의 기본적인 원칙은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종교인 납세에 적용하면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하고, 소득이 적은 종교인은 세금을 적게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소득 종교인보다 고소득 종교인의 세부담을 더욱 낮춰”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³¹⁾ 또한 기타소득 납세 방안은 저소득 종교인들의 복지혜택을 축소시키고 그 결과, 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납세할 경우, “전체 종교인의 80%에 해당되는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³²⁾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구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속성적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특정 소득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또는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³³⁾

29) 위의 논문, 160. 2006년에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는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근거하여 고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검찰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명확화되어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과세하지 않는 관행 등에 비추어 비과세한 것을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국세청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위의 논문.

30) 위의 논문, 161. 이를 알기 쉽게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금의 과세 비교>

구 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총수입(총급여)	2,556만원*	2,556만원
필요경비(소득공제)	908만원	2,045만원
소득금액	1,648만원	511만원
산출세액**	124만원	25만원

* 2,556만원의 총수입 계산 근거는 목회자의 월평균 사례비(본문 각주 18번 참고)에 근거한 것임

** “산출세액 계산 시 독신가족에 표준공제(100만원)만 받는 경우를 가정함” 위의 논문.

31) 위의 논문, 161.

32) 위의 논문, 162. 김집중, “종교인 기타소득과세법안을 통해 본 한국기독교의 납세의무이행사항”,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제170차 월례포럼(2014.1.27.), 3. 위의 논문, 162에서 재인용.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이므로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위의 논문, 162. 60여개의 개신교 교단 내에는 약 65,000개의 교회가 있고, 목회자의 수는 약 12만 명이다. 이 가운데 약 80%의 목회자들이 면세점 이하의 소득(4인 가족 기준, 월 174만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약 20%의 목회자들이 실질적인 납세 대상자가 된다. 유경동,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 『신학과 세계 75집』 (2012.12), 292.

33) 박중영,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163-64.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을까? 박중영은 먼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박중영은 종교단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의 자발적인 납세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교인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종교단체의 회계 처리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면 종교인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파악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합리적인 종교인 소득의 과세제도 운영과 조세 부담”의 실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³⁴⁾

2. 성서신학의 관점

심상법(총신대 신약학)은 그의 논문 “목회자 납세에 관한 성경적 제안”에서 목회자 납세문제를 성서신학(신약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논문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시행령(2013년 8월)이 나오기 2개월 전에 개최된 예장 총회(합동)의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서 발표된 그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이 연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목회자 납세논란의 이슈들을 “성직으로서의 목회”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근거하여 성찰한 후에 그는 다음의 결론을 내렸다.

성직자의 납세가 국가의 교회간섭 혹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국가의 세무사찰의 빌미로 제 공될 수 있다는 패배의식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기독교(개신교)에 대하여 좋지 않는 시선을 보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보다 투명하고 떳떳한 종교인(성직자)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투명한 교회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천진한 생각일까?³⁵⁾

개신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는 “백번 양보해서라도” 현재의 개신교가 “자발적인 납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비과세 항목에 대한

34) 위의 논문, 165-67. 목회자 납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교회재정공개와 목회자 납세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존하고 있는 현안”이다. 외부감사제도의 수용은 교회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한다. 소형교회와 개척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는 이러한 외부감사제도를 통해 사회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는 한국 개신교의 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종석·조현정,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한 성경적 비평” 『로고스경영연구』 제13권 제2호(2015.6), 58.

35) 심상법, “목회자 납세에 관한 성경적 제안”, 802-03.

구체적인 논의와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들을 향한 적절한 세제 혜택을 요청한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성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근로세가 아니라 “종교인세”로 전환한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한다.³⁶⁾

그러면 이러한 그의 결론은 어떤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일까? 그는 납세를 찬성하는 신약성서의 입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성직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견해에 대해 반대하고, 정교분리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을 비판한다. 그의 견해를 순서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신약성서는 그리스도인의 납세의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로마서 13장 6-7절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는 이 말씀 안에서 종교인 과세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오늘의 목회자들의 상황을 읽어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과세를 빌미로 국가가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세무사찰이나 종교탄압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의 확신(“진노 가운데 악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롬 12:19 참조)처럼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할 때 두려움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납세의 의무 또한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롬 12:5)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³⁷⁾

둘째, 성직과 성직자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심상법은 목회자의 성직 수행을 근로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성직의 고유한 기능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일반 직업과의 질적인 차별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동시에 목회사역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일반 국민의 근로를 “속된 것이고 낮은 차원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목회자의 잘못된 우월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정리하면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성직은 일반적인 다른 직업과 차이가 없다. 성직은 넓은 의미에서 근로행위(고전 9:9, 딤후 5:18)에 속한다. 그러나 목사직은 일반 직업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한 “복음전파와 가르침을 위한 특수한 영적 사명의 수행직(딤후 5:17)”이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성직의 특수성이 목회자의 면세를 지지할 수 없는 것이고, 목회자의 납세행위가 성직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³⁸⁾

36) 위의 논문, 803.

37) 위의 논문, 787-89. 세금납부를 권면하는 성서구절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막 12:13-17, 마 22:17-22, 마 17:24-27, 롬 13:1-7, 벧전 2:13-17) 위의 논문, 787-93.

38) 위의 논문, 793. 심상법은 여기에서 특별히 성직의 의미와 관련하여 납세반대를 주장하는 한명수 목사와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의 손봉호 박사 간의 논쟁을 분석한다. 한명수,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1/성직자 자진납세 절대 안 된다” 『월간목회』 (1992.2), 69-70. 손봉호,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2/목회자

셋째, 정교분리 또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 심상법의 견해에 의하면 정교분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납세반대론자들은 국가가 종교인의 납세의무를 약용함으로써 종교인 납세가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간섭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납세찬성론자들은 정교분리에서 “분리의 의미”보다는 “돕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 입장은 세금을 “국가의 공적인 업무와 사업을 위하여 내는 비용”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목회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혜택에 대하여 그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된다. 헌법 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제 38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목회자는 현재 신정국가가 아니라 일반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러한 검토 후, 그는 신중성과 균형을 바탕으로 정교분리 또는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분리와 특수성을 강조할 경우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목회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는 국가의 통제나 간섭이 아니다. 국민의 공익을 향상시키는 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의” 성직자의 납세는 시행되어야 한다.³⁹⁾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한 연구는 납세찬성론과 납세반대론의 두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납세찬성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종교인 납세를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자기 자신을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납세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의 공적인 봉사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토대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래에서 종교인의 납세문제를 교회의 공공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공적 책임과 연결하여 검토할 것이다.

V. 종교인 납세 문제와 기독교윤리

1. 종교의 공공성과 납세문제

목회자 납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공권력도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기본 인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⁴⁰⁾ 종교의 자유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일본의 공공철학자, 야마와키 나오시의 옳은 지적처럼 종교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사람들의 모임과 조직

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월간목회」 (1992.2), 66-67.

39) 심상법, “목회자 납세에 관한 성격적 제안”, 793-95.

40) 야마와키 나오시/성현창 옮김,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이학사, 2011), 194.

이며, “그 활동의 사회성”을 고려하면 국가와 구별되는 공공성의 차원을 가진다.⁴¹⁾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사회학자, 벨라(Robert Bella)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공공선에 대하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토의를 하는 “퍼블릭 처치”(public church, 필자 주: 공적 교회 또는 공공의 교회)의 의미를 강조한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퍼블릭 처치는 미국 사회의 공공성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문화적 공공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⁴²⁾ 종교의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독일의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 Harbermas)의 주장에서도 엿보인다. 그는 후기 세속화 사회에서 생명의 개념과 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성과 신앙 사이의 침투(osmosis)”를 논하면서, “양자는 서로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⁴³⁾”고 주장한다.

종교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철학과 사회학의 입장은 국내의 종교사회학자, 정재영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종교의 공적 역할을 교회의 공공성과 연결시킨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교회는 “사회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때,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교회는 “스스로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하고, 교회 대내외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회복해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⁴⁴⁾ 흥미롭게도 정재영의 이러한 입장은 본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다. 그에 의하면 목회자 납세는 “사회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다. 그는 목회자 납세찬성론이 주목받는 이유를 “교회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영리단체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판에서 찾는다. 그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물질과 자원은 한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⁵⁾

41) 위의 책.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는 “널리 사회 일반의 이해와 관련된 성질”을 말하고, “공적인” 또는 “공공적인”이란 형용사는 다음의 의미 - “일반 사람과 관련된”, “공개적”, “정부나 나라의” -로 사용된다. 철학자, 아렌트(Hannah Arendt)는 공공성과 공적인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했다. 첫째는 “만인이 볼 수 있고 만인에게 개방되어 가능한 한 가장 널리 공시되고 있는 현상”과 둘째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세계”이다. 아렌트는 특별히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본보기로 들어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과는 명확히 다른 공공적인 영역에서 인간은 타자와 다른 자기를 드러내면서 ‘언어활동’을 통해 타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해간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의는 “공공성의 창출을 ‘자기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생각하기 위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위의 책, 21-22.

42) 야마와키 나오시, 『공공철학이란 무엇인가』, 195.

43) J. Harbermas/J. Ratzinger, *Dialektik der Saekularisierung. Über Vernunft und Religion* (Freiburg, 2005), 7-8.

44) 정재영,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모색”,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공공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189.

45) 정재영, “종교단체 과세문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문제”, 『새가정』 (2008.4), 52-53. 박경준(동국대 불교학)은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불교의 근거를 종교의 공공성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종교인 납세를 강조하

2. 교회의 공공성과 본회퍼

종교의 공공성이란 주제는 비단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만이 다룬 주제는 아니다. 종교의 공공성, 특히 교회의 공공성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구의 주제이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그의 저서, 『윤리학』의 “형성의 윤리(Ethik als Gestaltung)”에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교회의 공공성은 그의 확신에 의하면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의 공적인 이슈와 그것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공적인 논쟁을 회피한 인간은 개인적 미덕이라는 피난처에 도달한다. 그는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힘을 다해 선을 행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임의로 포기한 그는 자신을 갈등에서 보호해주는 한계선을 정확하게 지킬 줄 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의 앞에서 눈과 귀를 닫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가 온갖 일을 행하더라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불안 때문에 파멸하거나, 가장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될 것이다.⁴⁶⁾

본회퍼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교회의 윤리를 말하고 있다. 교회의 윤리는 교회공동체의 윤리이며, 그것은 교회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취하는 “형성의 윤리”이다.⁴⁷⁾ 본회퍼는 히틀러의 반인권적인 통치에 맞서 저항함으로써 교수형을 당했다. 본회퍼의 죽음이 그가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비판한 공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인간적인 삶을 박탈당했던 유대인을 위해 교회의 공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나친 생각일까?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그의 유명한 교회론적인 비전(Vision), “타자를 위한 교회(Kirche für andere)”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때 교회이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의 세상적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

는 사회의 분위기는 특별히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일부의 성직자들의 일탈행위는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켰지만, 그는 종교인의 납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서 그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설사 세수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는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376-77.

46) Dietrich Bonhoeffer, *Ethik*, hg. v. E. Bethge/ I. Tödt/ C. Green, DBW 6, (Gütersloh: Chr. Kaiser Verlag, 1992), 66.

47) “형성의 윤리는 오직 교회 안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장소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기독교윤리는 이러한 선포와 사건을 위해 봉사한다.” 위의 책, 90.

배하면서가 아니라 돕고 섬기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이며, 또 '타자를 위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⁴⁸⁾

본회퍼는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정체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그 삶은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의 공적인 이슈와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세상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회퍼가 유대인을 위한 변호를 포기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던 독일 고백교회를 비판했던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⁴⁹⁾ 이러한 교회의 공공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신학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회의 공공성을 교회의 공적 책임의 형태로 이해하고 이를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움직임은 공공신학과 기독교사회윤리를 통해 나타났다.

3. 종교인 납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

본회퍼의 교회론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의 기독교윤리학자, 후버(Wolfgang Huber)는 일찍이 교수자격논문을 통해 세상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의 공적인 책임은 평화를 위한 사역과 이웃을 위한 봉사(Diakonia)을 통해 이행된다. 그는 군비경쟁이 치열했던 냉전시대의 상황 속에서 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회적 기관(Institution)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⁰⁾ 또한 그는 탈냉전의 시대를 넘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탈교회적인 상황 앞에 직면한 교회는 사회의 현실을 공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공공의 영역을 위한 선교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¹⁾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의 현장을 연결시키는 최근의 신학적 작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은 공공신학과 ‘선교적 교회론’이다. 성석환이 옳게 지적하였듯이 “공공신학은 후기세속사회에서 가치와 윤리의 사회적 의미를 재생시키는 종교의 공적 역할을 실천하라고 요구한다.”⁵²⁾ 선교적 교회론에 근거할 때, 지역사회는 교회의 단순한 전도의 대

48)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DBW 8, hg. v. C. Gremmels/ E. Bethge /R.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 Tödt.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98), 560.

49) 위의 책, 558.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한 본회퍼의 견해는 그의 위임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견해를 따르면 가정(결혼), 노동(문화), 관현(정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위임(Mandat)이다. 각 위임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 하에서 존재한다. 각 위임들은 서로 위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곁에 있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문화와 정부에 대하여 교회가 갖는 위임의 책임성은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ietrich Bonhoeffer, *Ethik*, 392-398.

50) Wolfgang Huber, *Kirche und Öffentlichkeit*.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1973), 626-28.

51)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2006), 541.

상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공유해야 하는” 장소이다.⁵³⁾ 교회의 공공성은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분리될 수 없고,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에게 요구되는 자연스러운 과제이다.⁵⁴⁾

이러한 입장은 종교인 납세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문시영은 목회자 납세문제를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다루었다.⁵⁵⁾ 그는 미국의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입장에 서서 “목회자 납세논란을 통해 본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목회자 납세논란을 “교회에 대한 시민적 공공성의 요구”로 보면서, 납세논란이 납세반대 또는 납세찬성 등의 “현상적 논의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길 원한다.⁵⁶⁾ 그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목회자 납세 논란을 기독교사회윤리학과 공공신학의 근거 위에서 성찰하는 것에서 발견된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목회자 납세문제의 해결은 교회와 시민사회, 교회와 정부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그 해결은 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 즉 납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구비할 때 가능하다.⁵⁷⁾ 교회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공공성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하여 당당한 공공적 관심으로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윤리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⁵⁸⁾ 비슷한 맥락에서 유경동은 목회자 납세문제를 교회의 공적 책임과 기독교윤리에 비추어서 분석한다.⁵⁹⁾ 그의 연구에 의하면 루터(Martin Luther)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의 질서를 책임질 당시의 체제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했다. 또한 루터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것”을 “신앙인의 책무”로 보았다.⁶⁰⁾ 유경동은 특별히 독일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교황청에 대한 루터의 비판에 주목한다. 그 당시의 독일의 성직자들은 모두 교황청에

52) 성석환, “지역공동체의 문화복지를 위한 공공신학의 실천적 연구”, 「선교와 신학」 33집 (2014.2), 266.

53) 성석환,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선교의 공공성 연구: ‘후기세속사회’의 종교담론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7집 (2015.10), 16.

54)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선교학의 관점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의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개인적이지만 공적인 복음”, “특수적이지만 공적인 역사적 사건”. “타당하지만 공적인 기독교신앙의 구조”를 강조한다. 허성식, “Lesslie Newbigin’s Debate with Post-Christendom: Public versus Privatized”, 「선교와 신학」 35집 (2015.2), 235. 성서와 신학 그리고 교회사의 전통에 따르면 공공성의 개념은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1)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의 삶의 형성의 차원, 2) 현실개혁적 차원, 3) 변증적이며 대화적 차원” 장신근,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 공공신학적 관점과의 대화”, 「선교와 신학」 33집 (2014.2), 282.

55) 문시영, “목회자 납세논란을 통해 본 교회의 공공성” 새세대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81-99. 위의 책, 81.

56) 위의 논문, 81. 그는 납세논란의 배경 아래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 의도는 다른 아닌 “교회를 시민적 공공성 앞에 소환하려는” 의도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윤리적 모색”이라고 한다. 위의 논문.

57) 위의 논문, 86-89.

58) 위의 논문, 93.

59) 유경동, “목회자 세금납부와 기독교윤리”, 288-310.

60) 위의 논문, 305-06.

세금을 바쳤지만, 교황청은 기독교를 이교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세금을 낭비했다고 한다.⁶¹⁾ 그는 이 사실로부터 목회자 납세의 근거를 찾는다. 그는 “국가가 기독교의 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여 주고, 한국 내 기독교인의 인권과 생명을 지켜준다면”, 목회자 납세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의 결론이 보여주고 있듯이 목회자가 “영혼을 위한 영적인 짐”만이 아니라 “세금의 짐도 져야 한다면”, 목회자는 납세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에 근거한 목회자 납세는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해야 한다.⁶²⁾

4. 소결론

종교인 납세문제는 종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사회철학과 종교사회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종교는 사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을 지닌다. 종교기관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이다. 교회를 포함하여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본회퍼의 교회론과 기독교윤리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목회자의 신앙과 윤리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사회 속에서 실존할 때 교회의 의미를 갖는다.⁶³⁾ 목회자 납세문제는 공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제 교회는 사회를 위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타자를 위한 교회”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공공신학의 입장은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연관시킨다.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목회자 납세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과 윤리적인 실천의 한 형태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인 납세논란의 역사적 과정과 종교인의 소득과 납세현황에 살펴보았다. 그 후에 본 연구는 종교인 납세문제를 세무학과 성서학의 입장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본

61) 위의 논문, 306.

62) 위의 논문, 307.

63)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공동체인 동시에 사회적 공동체(Gemeinschaft)이기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Dietrich Bonhoeffer,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hg. v. J. v. Sossten, DBW 1,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6), 55-61.

주제를 교회의 공적 책임과 연관하여 성찰했다. 본 연구는 이제 결론의 자리에서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 교회는 종교인 납세를 실천함으로써 추락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는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성문제 및 재정비리 그리고 교회이권다툼 등등의 문제로 사회적 신뢰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고려할 때 개신교는 종교인 납세문제를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실천하는 성직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의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개신교의 변화는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이는 장차 복음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기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⁶⁴⁾ 둘째, 교회는 종교인 납세의 근거를 신학적인 관점 - 공공신학, 기독교윤리학 - 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대한 철학, 종교학, 사회학의 관심은 이제 신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은 종교의 공공성의 실천과 공적인 역할을 종교의 근본적인 과제로 강조한다.⁶⁵⁾ 목회자들은 교회의 공공성의 개념을 숙지하고, 사회를 위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납세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기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이며, 납세의 실천은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행의 구체적인 한 형태이다. 셋째, 교회는 개신교 내부에서 목회자 납세에 대해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개신교 내부에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반대하는 교단들도 많고, 입법을 통한 납세보다는 자발적인 납세를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다. 인간의 약한 본성은 납세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교회의 공공성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인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회의 공적 책임과 납세입법화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입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면 이는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⁶⁶⁾ 넷째, 교회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입법안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입

64) 최근의 설문조사(2016.2)의 결과에 의하면 개신교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종교인 납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1개 신학대학원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의 학생들이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했다.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150&yy=2016 (접속일: 2016.12.23.)

65) 공공신학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공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들의 업적과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장신근, “기독교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논의: 공공신학적 관점과의 대화”, 304.

66) 교회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둘째, “교회가 매월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목회자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목회자 개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또는 지방회, 교단차원에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회와 목회자는 “세무신고절차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든 상관없이 교회 또는 목회자가 “원천징수 신고납부와 연말정산 절차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호윤, “종교인 과세 어떻게 시행되나”, 「활천」 vol. 750 (2016), 23.

법안은 소득신고의 선택을 전적으로 종교인에게 맡기고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세율상 차이가 많이 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이고 일반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사항으로 결정한 것은 근로소득에 근거한 목회자 납세가 성직의 의미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개신교의 분위기를 고려한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책은 조세형평성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토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회자의 경제윤리

신기형 목사 이한교회 담임목사

I. 서론: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곧 신뢰이다.

목회자는 돈보다 명예를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는 자이다. 목회를 성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일반적인 직업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회자라해도 경제활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목회자 역시 돈의 필요와 힘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느끼며 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생활에 있어 넉넉함을 유지하고 싶은 이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현실이다. 목회자 역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반면 돈이 많으면 그로 인해 마음이 교만해 진다. 목회자가 돈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 때 칭찬으로 들리고 돈을 너무 밝힌다고 말할 때 수치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사례비가 삭감되거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때 목회자의 자존감은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두 마음 사이에서 목회자가 선택해야 할 자리는 어떤 곳일까? 청빈인가 아니면 필요인가? 필요라면 얼마가 목회자에게 적당한 양일까? 목회자의 경제생활에 있어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로버트 하일브로너(Robert Heilbroner)와 윌리엄 밀버그(William Milberg)는 인간이 경제적 희소성을 느끼는 것은 자연의 결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도 여전히 부족을 느끼는 것은 자연(nature)으로부터 오는 희소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서 오는 희소성 때문인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재화를 생산하는 우리의 능력은 점점 쌓여져 가지만 자연의 결실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보다 훨씬 더 잔 걸음으로 앞질러가는 것이다...우리의 욕구라는 것은 이처럼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다.”⁶⁷⁾ 부자가 될수록 필요한 것은 더욱 생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목회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는 그들이 얼마를 받고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액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청빈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 즉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 성도들이 낸 헌금을 목회와 사역에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경제 윤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 글은 목회 및 지도력의 기본이 되는 신뢰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날 돈이 갖는 경제적 이해를 설명한 다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경제적 판단과 집행에 있어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신뢰: 관계와 지도력의 핵심

워렌 베니스(Warren Bennis)와 버트 나누스(Burt Nanus)는 <리더와 리더십>에서 리더가 추종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으로 비전, 의미, 임파워먼트, 그리고 신뢰라고 말한다.⁶⁸⁾ '리더에게 있어 비전이 필수품이요, 권력은 현금과 같다면. 신뢰는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결집시키는 접착제이다.'⁶⁹⁾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신뢰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리더십은 이 관계 안에서 발휘됨을 강조한다.⁷⁰⁾ 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 협력이 가능해 지는 것, 충성이 강화되는 것,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상호 신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신뢰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데일 잔드(Dale Zand)는 지도력의 세 요소로 지식, 신뢰, 권력을 든다.⁷¹⁾

지식은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아는 것이며 또한 이 일의 문명한 목표와 방법에 대해 아는 일

67) 로버트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자본주의*, 홍기빈 옮김(서울: 미지북스, 2010), 23.

68) 워렌 베니스, *리더와 리더십*, 김원석 옮김(서울:황금 부영이, 2005), 30.

69) 베니스, 69.

70) 레너드 스위트,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강봉재 옮김(서울: IVP, 2005), 119. 스위트는 로버트 뮈슬을 인용하는데, “휴지가 비를 맞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의심을 받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다.”

71) Dale E. Zand, *The Leadership Triad: Knowledge, Trust, and Power*(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이다. 비록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해도 주어진 목표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때 추종자들은 따른다.

두 번째 지도력 요소인 권력은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에서 효과를 얻는다. 힘은 주어진 직위에서 출발하지만, 그 권력이 영향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위에 주어진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제 지시하고, 또 언제 위임할 것인지를 잘 분간하고, 또한 일들을 평가하며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때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란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충성과 헌신을 자아내게 요소이다. 지도자를 믿는 것, 지도자의 비전과 생각을 따르되 확신을 갖고 따르게 하는 것, 추종자의 긍정적 동기를 형성하는 것이 신뢰이다.

목표에 성취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사람과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함을 보일 때,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할 때, 추종자들은 리더를 믿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지도자는 이런 관계 아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⁷²⁾

젠드는 말한다. ‘지도자는 추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신뢰는 받아야 한다. 비록 성인들 같이 흠이 없을 순 없어도 적어도 추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면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⁷³⁾ 신뢰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수고나 마음이든. 지도자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약속한 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긍정적인 예측성”이 확보되면 지도자는 사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수 있다.

워렌 베니스는 리더가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뢰는 결국 지도자가 자신의 직위를 알고 그 역할에 걸맞게 행동하는 모습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⁷⁴⁾

그러면 자기 자리에 맞는 행동과 결정, 돈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보여야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돈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목회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먼저 돈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과 그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기능과 역기능을 살펴 본 다음, 신뢰 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안해 본다.

72) Zand, 91.

73) Zand, 3.

74) 베니스, 69-70.

III. 돈에 대한 성찰

1. 경제학에서 말하는 돈의 기능과 그 영향력

경제학은 돈에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다.⁷⁵⁾ 첫째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medium of exchange). 과거에는 물물 교환 형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화폐가 통용되고부터 돈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중간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가리켜 교환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둘째 돈은 가치 척도의 기준이다(unit of account). 모든 돈에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가치를 재는 표이다. 의자의 가치는 그 의자에 지불되는 돈의 액수로 정해지고, 자동차의 가치 역시 그 자동차에 지불되는 액수로 알게 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회비용이라는 주관적인 도구도 있지만,⁷⁶⁾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

셋째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store of value). 돈을 가리켜 유동성이 완전한 자산이라고 말한다. 유동성이란 현금화 하는 가능성을 말하는데, 돈은 그 자체가 현금이기에 유동성이 백퍼센트이다. 그러면서도 돈은 가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돈의 가치가 환율로 인해 변동하게 되어 돈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특징이 돈을 가진 자가 더 돈을 버는 일인데, 세상의 부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이유가 바로 돈을 가진 자가 돈을 버는 자본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⁷⁷⁾

이와 같은 돈이 갖는 기능으로 인해, 돈이 선택과 동일시되고, 가치 역시 돈으로만 평가하게 된다. 이제 돈은 단지 교환의 매개 수단이나 가치 측정의 도구가 아니다. 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되었고,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규범이 되었다.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고, 돈이 있는 자는 어디든지 좋은 대접을 받는다. 돈으로 인해 허락된 선택은 바로 힘을 뜻하며, 오늘날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돈을 가진 것과 같다.

반면 가난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가난을 가리켜 무

75)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옮김 (서울: 교보문고, 2010), 771-772.

76) 기회 비용이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어떤 것을 말한다. 즉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자가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그 직장을 포기한다면 그 직장은 목회의 기회 비용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 정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지만 다른 이에게는 목숨을 포기할 것 같이 느껴지기에 기회 비용은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77)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옮김(서울: 글항아리, 2014). 피케티는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를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은데 있다고 말한다. 현재 구조는 자본을 가진 자에게 더욱 부를 축적하기 쉽게 하는데, 이를 그는 과거가 미래를 잡아 먹는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의 재산은 1990년에 40억 달러였는데 2010년에는 500억 달러가 되었다. 이는 노동을 해서 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본이 더 돈을 벌게 한 것이다.

엇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원하는 바를 향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⁷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건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취미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가난한 자들은 이런 원하는 것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권리는 바로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난을 가리켜 의무 부담자가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그 사람을 향해 의무를 이행할 자가 없는데 그 의무는 돈에 기초한 거래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도덕 감정론>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다. '우둔함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열시가 극히 부당하게도 흔히 반공과 연약함에 가해지고 있고, 지혜와 미덕에만 바쳐져야 할 존경과 감탄으로 부와 권세를 대하는 성향이 우리의 모든 도덕 감정을 타락시키는 가장 크고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라고 말한다.⁷⁹⁾

특히 한국 사회의 특성은 잘 산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체면 문화의 영향이다. 김찬호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어서 식, 의, 주의 순서인데 우리는 먹는 것보다 남에게 보이는 옷이 중요해 의, 식, 주의 순서로 되었다.⁸⁰⁾

2. 돈의 속성과 하나님

돈은 그 특성상 하나님과 너무도 닮았다.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는데, 첫째 돈은 어디서나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만원이나 부산에 있는 만원이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은 돈 밖에 없다. 집의 경우 서울에 있는 집과 부산에 있는 집의 가격은 다르다. 비록 같은 평수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모델로 지었다고 해도 위치에 따라 가치는 다르고 또한 부산에 있다고 해도 학군에 따라 그 가치는 또 달라진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다. 돈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치는 같다.

둘째 돈은 어디서나 동행한다. 돈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할 수 있고 돈으로 인해 우리가 이동함에 있어 힘들어할 경우는 없다.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카드나 현찰을 갖고 갈수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을 챙기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돈을 챙긴다.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해 주는 자원이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대한 환상을 갖기 너무도 쉽다. 돈이 많으면 힘을 가진 것 같고, 돈이 많으면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돈이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이다. 하나님을 구하되 돈을 위해서 하나님께

78) 조이스 애플비, *가치없는 자본주의*, 주경철, 안민석 옮김(서울: 까치, 2012), 477-480.

79)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박세일, 민경국 옮김(서울: 비봉출판사, 2012), 109.

80) 김찬호, *모멸감* (서울 : 문학과 지성사, 2014), 113.

구하고,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의 뜻을 먼저 세운 다음 사후 승인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IV. 성경에서 말하는 돈

그러면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 돈은 필요한 선(good)이다.

선(good)이란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요소인데,⁸¹⁾ 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의, 식, 주, 그리고 건강과 교육의 필요를 채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자원이 돈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돈으로 채워진다.

나아가 돈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헌금이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교회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해서 도와주었고, 사도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헌금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여,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이 헌금에 참여하였다.⁸²⁾ 사도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가 지원한 것을 갖고 초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바울이 나중에 스스로 벌어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스스로 사역의 필요를 채우든, 교회가 헌금을 해 주든 돈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

2. 부요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경제적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은 구약에서 특별히 강조된다.⁸³⁾ 축복이란 이미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땅에서 살며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율법이 정해 놓은 십일조를 정확하게 드리면서도 밭의 소출이 늘고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육축과 종들이 있었고, 야곱의 경우 이삭을 피해 도망을 갈 때만 해도 지팡이

81)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넷이다. 육체적 필요, 정서적 심리적 필요, 관계적 사회적 필요, 영적 창조적 필요.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음식과 집과 의복이 있고, 정서적 필요를 위해 예술과 문화가 있으며, 관계적 필요를 위해서는 가족과 친구,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종교가 있다. 이 네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는 선(good)이라고 부른다. Kevin O'Rourke, ed. *A Primer for Health Care Ethics*(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0), 4.

82) 사도행전 20:4에 나오는 베뢰아 사람 부로고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도바울과 동행하던 자들이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8:1에서 고린도 교회에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한 마게도냐 교회를 본 받으라고 한다.

83) 잠언 14:22; 22:4; 전도서 5:19.

하나만 갖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에는 두 배나 되는 물질을 갖고 돌아온다. 베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라반 삼촌에게 열 번이나 속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욥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하겠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된 이후, 자녀와 재물을 다 잃었지만, 다시 회복되는데, 자식의 복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했지만 각자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쁠 때 이들은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었고, 거두어도 먹지 못하였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받는 벌이었으며, 성전을 짓기로 했을 때 이들의 형편은 달라진다.⁸⁴⁾

그러나 성경은 가난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지는 않는다. 경제적 풍요가 가난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이지만 의롭고 정직한 가난은 불의한 부자보다 더 낫고, 마른 떡 하나만으로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다.⁸⁵⁾

특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로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 오히려 가난이나 부요함이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주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발견케 하셨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고, 가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사함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돈에는 부작용이 있다.

성경은 돈의 선한 용도와 축복의 증거임을 인정하면서도 돈에 대한 부작용을 아주 강조한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돈이 있을 경우 가난하고 배고픈 자의 형편을 잊을 수 있으며, 돈을 자꾸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에, 돈을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사도바울의 경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찢은 것과 같다고 말한다. 부자가 되려는 자에게 경고하기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한다.⁸⁶⁾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돈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

84) 학개 1:9-11; 2:19.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85) 잠언 17:1; 19:1,22.

86) 디모데전서 6:6-10, 17-19.

면서,⁸⁷⁾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다. 돈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고, 결국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너무 쉬움을 강하게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돈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받을 때 보다 나눌 때 풍성해 지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다고 말씀하셨다.⁸⁸⁾

존 파이퍼(John Piper)는 소유의 기쁨이 곧 사라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⁸⁹⁾ 만약 소유로 참된 만족을 얻는다면 세상은 온통 소유하기 위해 싸우는 장소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한시도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는 *새로운 금융시대*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면 특별한 이점을 갖는다는 생각을 거대한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마치 전쟁을 치르면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처럼,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실러는 말한다. “큰 부를 획득하면 그 부자의 가족 한 명 한 명 모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한계 내에서 그런 부들이 그들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게 해준다...그러나 부는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과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도록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기업 활동에서 얻는 진정한 만족의 대부분은 사실 이익의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기쁨은 대개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고객을 돕거나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얻는 것이다.”⁹⁰⁾

또한 돈에 대한 염려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장애가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데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⁹¹⁾

마지막으로 돈은 결코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알려 주신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홍수가 임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바로 돈이 그렇다. 돈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탄식하며 슬퍼하고 이를 깊이 심할 것이다.

4) 돈의 적당량은 각자 다르다.

성경은 얼마가 우리에게 적당한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아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며, 열심히 수고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선한 일을 더

87) 마태복음 6:24.

88) 누가복음 12:15; 사도행전 20:35.

89) 존 파이퍼, *묵상*, 차성구 옮김(서울: 좋은 씨앗, 2000), 320.

90) 로버트 실러, *새로운 금융시대*, 노지양 등 옮김(서울: RHK, 2013), 384-385.

91) 누가복음 12:15; 마태복음 6:19-21; 마가복음 4:19.

잘 감당하기를 사도바울은 기도한다.⁹²⁾

그러면 돈은 얼마가 적당한 양일까? 성경은 물질의 양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맡기는데, 그는 각 사람의 영적인 역량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양이 적당한 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양이 적당한 양이고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작은 양도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이는 많은 양이라도 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아굴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
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30:8상-9).*

이 기도는 돈이 갖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잘 반영하는 말이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포함해서 선한 일에 쓰일 때이다. 그러나 돈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부당한 독립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돈 보다는 신앙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돈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기 쉬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자의 기도이다.

요약하자면 성경은 돈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선으로 보면서도, 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여, 돈에 대한 경계와 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다.

V. 목회와 돈

그러면 목회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돈은 선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타락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면, 이 일에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면 목회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때 교인들에게 본이 되며 사역의 원활유인 신뢰를 얻어 목회를 힘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목회자가 재정에 있어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둘로 나누어 제시하려고 한다. 하나는 교회의 공적인 재정 충당과 집행을 위한 지침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 개인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지침이다.

92) 데살로니가후서 3:10; 에베소서 4:28.

1. 교회적인 재정 마련과 집행에 있어.

우선 성도는 헌금과 교회 재정에 있어 매우 민감함을 목회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몸으로 수고하는 것과 헌금을 내는 것과는 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몸으로는 봉사할 수 있고 수고를 해도, 돈을 내라는 것에는 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몸은 본인 혼자 수고로 그 부담이 해결되지만 돈은 혼자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다. 돈이 지출될 경우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간이나 몸으로 봉사하는 것과는 좀 더 깊은 고민을 돈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

돈에 대해 더 예민한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자신을 지탱하는 보다 근원적인 자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몸이 힘들어도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에,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몸이 피곤한 것을 선호한다.

특히 오늘날 행동 경제학의 발견해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두 배나 되기에, 한번 들어온 것은 다시 내어 놓기가 어렵다.⁹³⁾ 특별히 몸의 피곤함은 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출된 돈이 다시 채워질지는 좀 더 불분명하다.

여기에 신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회나 목회자가 그동안 보여준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이 분명했다면, 그동안 교회해서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약속대로 집행되었다면 교인들의 참여는 좀 더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과 실천이 달랐다면, 돈과 관련된 교인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며 소극적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교인들은 목회자와 교회를 믿지만 늘 재정이 투명하고 바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만족한 결과가 없다면 다음번의 헌금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선한 일이 방해 받지 않도록 더욱 주의한다고 말한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후 8:20,21).

이를 위해 고려할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는 교인들의 형편이다. 재정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교인들의 형편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아야

93) 행동 경제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근 가장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경제학 분야이다. 최근 심리학이 연구 성과를 경제현상에 적용하는 학문인데, 종전의 경제학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론을 구성했다면 행동 경제학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본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경제 선택을 설명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경제 선택을 연구한 책은 다음과 같다.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넛지*, 안진환 옮김(서울: 리더북스, 2009), 하노 벡, *부자들의 생각법*, 배명자 옮김(서울: 갤리온, 2013).

한다. 교인들의 형편에 비해 너무도 과도한 액수를 책정한다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고, 기존의 헌신적인 성도들의 열심마저 곧 식게 될 것이다. 동기 부여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제시될 때 형성되는데, 과도하게 제시하면 부담만 줄뿐 기쁨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준비이다. 교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돈이 새롭게 들어가는 사역을 소개할 때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할 경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재정을 보고할 것인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며, 또 얼마를 빌린다면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를 교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쪽 일만과 저쪽 일만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다. 비록 이 계산이 최종적인 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현실을 목회자가 알고 있음과 이를 점검해 보았음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계산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셋째는 확신이다. 교인들의 경제적 영적 형편을 고려하고, 앞으로의 할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확신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인가?’ ‘이 일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인가?’

토마스 카알라이(Thomas Carlyle)는 <영웅 숭배론>에서 영웅의 특징을 다음 둘이라고 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로부터 오는 확신, 또 하나는 성실성.⁹⁴⁾ 목회자에게도 재정적인 일을 실행함에 있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교인들의 형편과 재정 현황을 점검해 보고 준비하는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갖는 확신.

마지막으로 보고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헌금을 요구할 때 뿐 아니라 헌금이 모였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재정을 맡아 담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온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

2. 목회자 개인의 경제생활

또한 개인적으로 경제와 관련해 목회자는 다음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첫째, 권리보다는 믿음을 주장해야 한다. 목회자마다 받은 사례금과 기타 지급되는 액수가 다 다르다. 교회 형편이 좋은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가 그렇지 못한 교회보다 더 나올 것이며, 또 교회 형편이 비슷해도 교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사례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때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와

94) 토마스 칼라일, *영웅숭배론/의상철학*(서울: 동서문화사, 2009), 88-91.

비교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교회는 이 요구를 들어줄지는 몰라도, 존경과 신뢰는 잃어버릴 것이다.

사이먼 사이넥(Simon Sinek)은 미 해병대 중장인 조지 플린의 말을 인용하며 “리더십의 대가는 사리 사욕이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의 특권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직원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⁹⁵⁾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모든 특권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목회자를 보며 예수님을 떠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히 다른 사도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사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함이며 또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고전9:27)

둘째, 재량권의 한계를 분명히 정한다. 재량권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재량권이란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따라서 재량권과 함께 견제의 수단을 반드시 구비해 놓아야 한다.

이안 로버트슨(Ian Robertson)은 <승자의 뇌>에서 말한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자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나운 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 권력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개를 멀찍이 떼어놓고 있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원칙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목줄을 이 개에게 단단히 채워둔다. 나를 길들이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성공하는데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⁹⁶⁾

목회자는 성도들의 재정적인 간섭이나 감사를 목회에 대한 침해로 여기기보다 목회의 보호요 동반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점점 받으며 수정해 나간다면 목회는 건강해 지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쌓이게 된다.

셋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늘 되어 본다. 게리 헤멜(Gary Hamel)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잃는 경우는 다음의 두 경우라고 말한다. 첫째는 성공을 쫓다가 동정심을 잃는 경우인데, 성공만을 바라다보면 동료, 직원, 주주, 고객을 자기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게 되어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95) 사이먼 사이넥,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지연 옮김(서울: 36.5, 2014), 119-120.

96) 아인 로버트슨, *승자의 뇌*, 이경식 옮김(서울: RHK, 2013), 363.

못하게 되고, 둘째는 성공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동정심을 잃는 경우이다. 힘이 있는 자리에 오르고 나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생각하게 되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⁹⁷⁾

목회는 자신의 마음을 소떼에 두고 양떼의 형편을 늘 살피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씀한다.⁹⁸⁾ 양 위에 군림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 함께 길을 걸으며 삶을 나누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함께 이루는 일이 목회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양에게 관심을 갖고, 양을 소중히 여기며 양들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재정을 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목회자가 얻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며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도들과 함께 감당하는데 긍정적인 기반이 된다.

3. 목회자의 세금(종교인 납세)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종교인 세금 납부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는데 결코 소홀이 여기지 않았다. 교회는 군 복무, 법질서 준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사회 구제 등 어느 단체나 조직보다 지도력을 발휘해 왔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했다.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서 목회자들의 염려는 분명 세금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는 특권 의식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다. 단지 이 일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종교 활동을 침해하는 소지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염려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세우며 교회를 이끄는 염려에 비하면 작은 비중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종교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시 대응하고, 그 간섭이 없도록 더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을 갖추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목회자 세금 문제는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금과 관련해서 직장 의료보험, 국민연금 급여가 연동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종교인 납세 문제에 있어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고, 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97) 게리 헤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방영호 옮김(서울: 알키, 2012), 54.

98) 잠언 27:23.

VI. 결론: 공중 시계와 개인 시계

지도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받고 있다. 지도자의 표정, 지도자의 행동, 지도자의 인간관계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주시하고 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말한다. “교회의 등불로 자처하는 만큼, 못사람들의 시선이 그대에게 집중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대는 늘 환하게 공개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⁹⁹⁾

따라서 목회자는 찰스 스펀전이 말한대로 “공중 시계”와 같다. 각 개인들이 자기 시계를 점검하고 수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공중 시계가 목회자이다. 스펀전은 말한다. ‘개인 시계가 잘못되면 그것을 보는 개인만 착각을 일으키지만, 공중 시계가 고장 나면 그 시계를 통해 점검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도 착각에 빠진다.’¹⁰⁰⁾

목회자의 경제 윤리는 바로 이 역할에 있다. 돈의 사용에 있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 성도들이 경제적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모델이 되며 또한 산 증거가 되는 것.

이를 위해 본인의 경제적 필요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돈의 가치와 순기능을 알면서도 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소망을 그분께 두고, 행정과 집행에 있어는 성실성과 정직함을 가지면서도 영혼과 은총과 약속을 일관되게 붙잡는 것, 성도들은 목회자의 이런 노력과 모습을 보며 목회자를 신뢰할 것이며 이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은 영광 가운데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

99) 리처드 백스터, *참 목자상*, 최치남 옮김 (서울: 2003년 생명의 말씀사), 70.

100) 찰스 스펀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원광연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21.

토의를 위한 질문들

1)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이 말은 한편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임을 도전하는 내용인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재정을 위한 수단으로 헌금이 남용된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헌금을 진정성 있는 헌신이 되게 하려면 교회는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까?

2)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의 은퇴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페인인 과학자이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라몬 이 카할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이상과 고유의 본능 이 두 가지 모두에 공평하게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목회자 은퇴에 대한 교회의 바른 준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3) 잠언 아굴의 기도처럼 부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또한 가난한 것도 환영할 일이 아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권면한데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로 처할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의 경제적 형편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주로 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나누어 보자.

4)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으로 부한 자를 환영하며 그런 성도가 자기 교회에 있음을 자랑한다. 야보서에서 말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구분하는 아주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인데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며 이런 경제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넘어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부록 : 종교인 소득 관련 개정 세법의 특징¹⁰¹⁾

1.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다. (법 21조 3항)

2. 소득 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155조의 6)

3.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상시 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인원 계산시 종교 관련 종사자 인원을 제외하므로 목회자 중심으로 본다면 목회자 소득은 반기 납부 대상이 된다. (시행령 186조 2항)

4. 독립적 입장인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 비용을 비과세소득으로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일을 하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가 수령하는 부대 경비 등은 원천적으로 수입 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 소득 중 다음 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하게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자녀 출산 보육 수당, -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일직비, 여비, 차량 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101) 최호윤 회계사, “개정세법이 가지는 의미”, 문화선교연구원 <http://www.cricum.org/1202>.

5. 기타소득자임에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독립적 지위에 있는 소득자에게는 현실적으로 퇴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행령 제 42조의 2 제4항 제4호)

6. 간주필요경비 계산 시 추정 연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지급 건 단위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종교인 소득 지급 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다시 월별로 배분한다. 이는 목회자의 소득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7. 종교인 소득 조사 시 종교인 소득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 (법 제170조)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에도 종교인 소득 조사 시 교회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30년 간 좋은교사운동, 기독교법률가회, 공명선거운동,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크리스천라이프센터, 대한민국교육봉사단 등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울러, 기윤실은 네트워크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전국 11곳에서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2017년 기윤실 주요운동

기윤실은 창립3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신뢰운동, 좋은사회운동, 바른가치운동, 청년운동”**을 전개합니다.

○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백종국(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동대표** 정병오(상임공동대표, 오딧세이학교 교사), 배종석(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현구(서울영동교회 담임) **상임집행위원** 신동식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조성돈 교회신뢰운동본부장(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교수), 이상민 좋은사회운동본부장(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 목광수 바른가치운동본부장(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 박선영 바른가치운동본부장(한체대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장형 기독교윤리연구소장(백석대 기독교학부 교수), 조흥식 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처** 김현아 박제민 박진영 윤신일 최진호

○ 후원 안내 (문의 : 02-794-6200)

- 후원계좌 |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국민 037-01-0504-979 하나 109-228746-00104
- 기윤실 홈페이지 좌측 '후원하기'

기윤실은 단체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받으며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세대빌딩)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이메일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기윤실 홍보영상



기윤실 후원하기